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평가기준

2020. 8.

코 리 아 엔 텍 ㈜

<표 1> 기술진단 대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100	※ 발주부서가 평가
		Ⅰ. 참여기술자	[50]		
		○ 책임기술자	25		절대평가
		- 기술등급	10		
		- 경력 및 실적	15		
		○ 분야별기술자	25		절대평가
		- 기술등급	10		
		- 경력 및 실적	15		
		Ⅱ. 참여업체	[50]		
		- 수행실적	20		절대평가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0		절대평가
		- 신용도	5		절대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5		상대평가
		Ⅲ. 가 · 감점			
		- 부실벌점	-2		절대평가

<표 2>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부평가방법</th></tr>
<tr><td rowspan="2">참
여
기
술
자
(50)</td><td>(1)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td><td>[25]
(10)

(15)</td><td>-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tr><td>특급기술자</td><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d></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d></td></tr></table>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table><tr><td>7년이상</td><td>7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15</td><td>13.5</td><td>12.0</td><td>10.5</td><td>9.0</td></tr></table></td></tr>
<tr><td>(2)분야별 책임기술자
(가)등급

(나)경력</td><td>[25]
(10)

(15)</td><td>- 등급에 따라 평가
<table><tr><td>고급기술자</td><td>중급기술자</td><td>초급기술자</td><td>초급미만</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r></table>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참여기간에 용역의 종류에 따른 가중치를 곱한후 합산한 기간에 대해 배점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와 중복 불가
<table><tr><td>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15</td><td>13.5</td><td>12.0</td><td>10.5</td><td>9.0</td></tr></table></td></tr>
<tr><td rowspan="2">참
여
업
체
(50)</td><td>(1) 수행 실적
(가)수행건수

(나)용역금액</td><td>[20]
(10)

(10)</td><td>- 최근 5년간 당해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참여지분 실적 인정)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동일시설의 연장계약, 재계약시 실적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 여러시설을 통합계약한 경우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
<table><tr><td>10건이상</td><td>10건미만
~8건이상</td><td>8건미만
~6건이상</td><td>6건미만
~4건이상</td><td>4건미만</td></tr><tr><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
- 용역금액
<table><tr><td>10억
이상</td><td>10억미만
~8억이상</td><td>8억미만
~6억이상</td><td>6억미만
~4억이상</td><td>4억미만</td></tr><tr><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td></tr>
</table>

<table>
<tr><th>평가
항목</th><th>평가요소</th><th>배점</th><th>세부평가방법</th></tr>
<tr><td rowspan="3">참
여
업
체
(50)</td><td>(2)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td><td>[20]</td><td></td></tr>
<tr><td>(가)기술개발</td><td>(10)</td><td>- 환경기술 관련하여 지정된 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환경기술에 관한 신기술 : 2.0점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 1.5점
・환경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1.0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table><tr><td>구 분</td><td>10년미만</td><td>10년이상
15년미만</td><td>15년이상
20년미만</td></tr><tr><td>특 허</td><td>100%</td><td>80%</td><td>60%</td></tr><tr><td>실용신안</td><td>100%</td><td>80%</td><td>-</td></tr></table></td></tr>
<tr><td>(나)연구개발
투자실적</td><td>(10)</td><td>- 최근3년간 기술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개발비율/업종 평균연구개발비율)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해당업종 평균연구개발 비율>
<table><tr><td>구분</td><td>90%
이상</td><td>90%미만
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td></tr><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table></td></tr>
<tr><td rowspan="3"></td><td>(3)신용도</td><td>[5]</td><td></td></tr>
<tr><td>(가)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td><td>(2)</td><td>-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4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 마다 0.4점씩 감점(3월 미만 0.4점, 3월 이상 6월 미만 0.8점)</td></tr>
<tr><td>(나)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비율
- 유동비율</td><td>(3)

(1.5)
(1.5)</td><td>-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table><tr><td>구분</td><td>90%이상</td><td>90%미만
80%이상</td><td>80%미만
70%이상</td><td>70%미만
60%이상</td><td>60%미만</td></tr><tr><td>자본비율</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r><td>유동비율</td><td>1.5</td><td>1.35</td><td>1.2</td><td>1.05</td><td>0.9</td></tr></table></td></tr>
<tr><td>(4) 사업수행계획서</td><td>[5]
(1)
(1)
(2)
(1)</td><td>
①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유지.관리 방안</td></tr>
</table>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 감 점	(1)가점 (2)감점 (가)부실벌점	 (-2)	- 해당없음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부실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으로 한다.

※ 붙임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Ⅰ. 참여기술자 (50점)

① 책임기술자 (25점)

㉮ 등급 (10점)

■ 평가방법

구 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타
점 수	10.0	9.0	8.0	7.0	6.0

- 책임기술자는 토목(상하수도), 환경, 기계, 전기분야에 한함
-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공동 도급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함

㉯ 경력 및 실적 (15점)

■ 평가방법

구 분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5.0	13.5	12.0	10.5	9.0

-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기타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운영 · 유지관리, 시공 · 설계 · 감리사업 수행실적** 기간에 용역의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기간에 따라 평가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 1.0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시운전포함) 0.9
  - 하·폐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타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 일정기간마다 1건의 경력을 산정하여 2건 이상의 업무중첩으로 인한 중복산정은 불가함
- 해당분야 기술자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의 확인자료로 평가

  ※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 후 소숫점 이하는 절사한다.

  (작성예시 :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월)
- 참여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사항란 게재내용 포함) 첨부

② 분야별 책임기술자 (25점)

㉮ 등급 (10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구 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미만
점 수	10.0	9.0	8.0	7.0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환경, 기계, 전기분야 자격자에 한함.
-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책임기술자와 중복될 수 없음.

㉯ 경력 및 실적 (15점)

■ 평가방법 : 개별평가 합산 ÷ 분야별 책임기술자수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점 수	15.0	13.5	12.0	10.5	9.0

- 평가방법은 사업책임기술자와 동일
- 참여기술자는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함[자격증 사본(기재사항란 게재내용 포함) 첨부

Ⅱ. 참여업체 (50점)

① 수행실적 (2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시행한 **하폐수처리시설, 기타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운영 · 유지관리, 시공 · 설계 · 감리사업 수행실적** 기간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 기간에 따라 평가

◦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공인기관의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시설용량 및 참여지분 확인이 가능할 것)을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함(6개월 이상만 인정)

◦ 공동도급실적은 비고란에 지분율을 기재한다.(20%이상에 한함)

◦ 동일 처리장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운영관리의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1건으로 하고 여러 처리시설을 통합계약한 경우 개별 단위처리시설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함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수행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으로 평가)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시운전포함) 0.9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 수행건수(10점)

■ 평가방법 : 용역 수행 건수에 용역 종류별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된 수행 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 실적금액(10점)

■ 평가방법 : 수행건수의 해당실적 합산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10억이상	10억미만 ~8억이상	8억미만 ~6억이상	6억미만 ~4억이상	4억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②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20점)

㈎ 기술개발 (10점)

■ 평가방법

◦ 환경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신기술 : 2.0점
- 특허 : 1.5점
- 실용신안 : 1.0점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신기술은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최초 출원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한 건만 인정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 연구개발 투자실적 (10점)

■ 평가방법

◦ 최근(공고일 기준)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연구 개발 비율/업종 평균 개발비율)

<당해 참여업체 연구개발 비율/해당 업종 평균연구개발 비율>

구분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③ 신용도 (5점)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2점)

■ 평가방법

•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월마다 0.4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 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3월마다 0.4점씩 감점

(3월 미만 0.4점, 3월 이상 6월 미만 0.8점,...)

㉯ 재정상태 건실도 (3.0점)

■ 평가방법 : 자기자본비율(1.5점)과 유동비율(1.5점)을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 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당해 참여업체 재무비율/평균재무비율>

구 분	90% 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자기자본비율	1.5	1.35	1.2	1.05	0.9
유 동 비 율	1.5	1.35	1.2	1.05	0.9

• 정기결산서에 의하며 신규사업자는 최초 결산서, 합병·분할·사업양 수도를 한 사업자는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국세청에 신고한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④ 업무수행계획서 (5점)

㉮ 수행계획의 적정성(5점) : 상대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수행계획의 적정성	①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②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③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④ 시설유지·관리 방안	1.0 1.0 2.0 1.0

■ 평가방법 : 상대평가

•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우(20%),미(40%),양(10%),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우(90%),미(80%),양(70%),가(60%)로 참여업체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분한다.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4	1	2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구분	배점(%)	평가항목별 평가 기준
수	10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9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8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6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70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Ⅲ. 감점

㉮ 부실벌점 (-2점)

■ 평가방법

- 최근 1년간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평균 부실벌점)
- 부실벌점이 -2점을 초과하는 경우 -2점으로 한다.

구 분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감점)	0.1	0.5	1.0	1.5	2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부실벌점도 상기기준을 적용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기타 평가기준

○ 기간의 계산은 업체 연락(통보)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지침

□ 작성 개요

○ 제출기한 : 2020년 9월 4일(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코리아엔텍㈜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KnK 디지털타워 1308호

○ 제출서류 및 부수 : 용역참가신청서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 사본1), 사업수행계획평가자료 5부(1부 업체명 표기)

□ 작성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Ⅰ. 참여기술자

○ 본 진단에 참여하는 업체는 최소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분야별 기술자 명단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기술자의 자격

① 책임기술자(1인) : 토목, 환경, 기계, 전기분야중 1인

② 분야별책임기술자(3인) : 토목, 환경, 기계, 전기분야 중 3인(책임기술자분야와 중복 불가)

○ 참여기술자 현황

①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서식 1)

②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서식 2)

③ 참여기술자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서식 3)

○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의 경력증명 서류로 인정(증명서류첨부) -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인원에 한함.

※ 공동도급 시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Ⅱ. 참여업체

(1) 수행 실적 (서식 4)

○ 최근 5년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참여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의 실적

○ 복합 용역시 용역명을 분명히 표시하고 이중기재를 할 수 없음

○ 수행 실적은 연도별로 기재하며,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용량, 지분, 금액의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2) 신용도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서식 5)

○ 용역업자의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사실을 기술

○ 기술자의 최근 1년간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사실을 기술

○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6)

○ 자본비율, 유동비율에 대해 최근년도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E37, E381, 2.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에 대한 평균 자기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계산

(3)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서식 7)

㈎ 기술개발

○ 환경관련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유효건수 기재)

㈏ 연구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활동 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참여업체 연구개발비용/해당업종 평균 연구개발비용)을 평가

(4)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8)

○ 사업수행계획의 적정

Ⅲ. 가·감점 (서식 9)

(1) 가점 : 해당없음

(2) 감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의 누계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인쇄 및 제본방법】

○ 크기 및 지질 : A4 (210㎜× 297㎜), 백상지

○ 인쇄방법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본 : 양면 무선철(좌철)

【기타사항】

○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요구된 제출일에 접수되어야 한다. (우편접수 불가)

○ 기술제안서는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거 작성하고(입증·증빙서류 포함) 지침서에 요구하지 않은 사항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할 수 있다.

○ 입증서류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관련기관의 증명서를 원본으로 첨부하고, 부득이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표자가 “원본대조필” 하여야 한다.(입증서류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실적인정 불가)

○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비용청구 불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내용은 변경. 추가할 수 없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 과장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평가자료는 참가등록시 우리사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조회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이 해지된다.

○ 제출자는 심사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서식 1】

□ 참여기술자의 조직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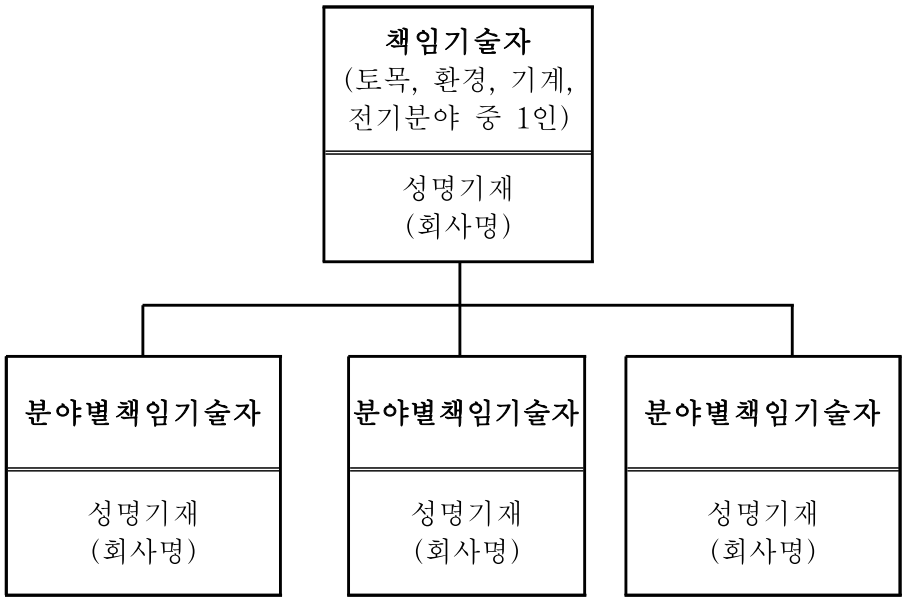

주) 1.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분야별책임기술자는 토목, 환경, 기계, 전기분야중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분야의 기술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토목분야는 상하수도분야에 한하며, 환경분야는 수질 분야에 한한다.
4. 사업책임기술자 1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자 3인으로 평가한다.
5.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분야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6. 공동도급시 참여지분율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예시) 대표사 70%, 공동도급사 30%로 참여시
대표사 : 4인 × 70% = 2.8 ≒ 3인
공동사 : 4인 × 30% = 1.2 ≒ 1인
※ 계산시 소숫점 첫째짜리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
※ 공동사가 1인 미만 산출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함.

【서식 2】

□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분 야 별		성 명	생년월일	본 과 업 참여직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건수 (건)
						종 류 등 급	취득일		
책임기술자 (○○분야)									
분야별책임기술자	00분야								
	00분야								
	00분야								

주) 1.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직무 분야 총 참여일수를 기재한다.(첨부된 증빙서류와 동일해야 함.)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년, 월로 기재한다.

(예 :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65개월의 경우 “5년 5개월” 로 기재)

3. 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 작성시 해당분야 용역종류는 아래와 같다.

※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 부여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시운전포함) 0.9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 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을 말하며,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과 2종사업장 이상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

※ 기타 환경기초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공공 가축분뇨처리시설, 폐기물 소각/매립/자동집하시설, 음식물 및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이하 동일하게 적용)

※ 설계는 계획, 기본계획,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이하 동일하게 적용)

※ 감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자체수행 감독 및 기술지도를 포함한다.(이하 동일하게 적용)

【서식 3】

□ 참여기술자의 개인별 자격 및 경력, 실적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분야경력 :	자격증 취득후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생년월일		최종학교(학위)		전공		근무경력			

○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 실적사항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시설용량)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참여당시		발주처	비 고
					소 속	직 위		
합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합 계			년 월					
기술진단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운영유지관리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시공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시운전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설계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감리	소 계(환산근무경력)		년 월					
			(년월~년월)					

주) 1. 과업참여기간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2. 해당분야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운영 · 유지관리(점검 및 정비, 시운전 포함), 시공 · 설계 · 감리사업에 근무한 경력으로 기재하고 증빙서류(참여기술자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

3. 참여기술자의 등급과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전력기술인협회 등 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평가하며 단위사업별 1개월(30일)이상의 참여기간만 인정한다.(사업 참여기간 중복 불가)

4. 참여용역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한다.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시운전포함) 0.9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5. 일정 기간마다 1건의 경력을 산정하여 2건 이상의 업무 중첩으로 인한 중복산정을 불가함

6.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작성방법은 참여일수에 30.4로 나누어 산정한 후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ex) 참여기간 724일의 경우 ⇒ 23.815월 ⇒ 1년 11개월

7. 해당분야 실적이 없으면 비고란에 “실적없음”으로 표시한다.

【서식 4】

□ 참여업체 수행 실적

구 분	용역명	용역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용역개요 (시설용량)	발주처	비고
기술 진단						
	소계					
운영 유지 관리						
	소계					
시운전						
	소계					
시공						
	소계					
설계						
	소계					
감리						
	소계					
합계						
환산 합계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및 특수목적법인(SPC)에서 발주한 하·폐수처리장,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 시공, 설계, 감리사업 등에 대하여 다음 참여용역종류에 따라 환산계수를 곱하여 평가한다.

※ 환산계수

- 하·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1.0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관리(시운전포함) 0.9
- 하·폐수처리시설, 기타 환경기초시설 시공, 설계 및 감리용역 0.8

2. 년도순(사업기간순)으로 작성한다.
3. 운영관리의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1건으로 하고 여러 시설을 단일용역으로 계약하여 운영한 경우 각각의 시설별 운영건수로 적용한다.
4. 동일 처리시설의 단계별 처리시설 및 연장계약 또는 계약변경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시운전 실적은 발주처의 허가를 받은 것에 한함(6개월 이상만 인정)
6. 동일 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시운전, 운영 · 유지관리, 기술진단은 각각의 실적으로 인정하며 또한 입찰에 의한 신규계약의 실적도 인정한다.
7.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건으로 인정한다.
8. 실적이 없는 업체는 “실적 없음”을 명시한다.

【서식 5】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참여업체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 참여기술자

성 명	기간(년, 월, 일)	사 유	제재기관	비 고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기간을 기재
2.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3. 해당사항이 없으면 비고란에 “해당없음” 표시
4. 허위사실 기재시 평가항목 전체를 0점 처리함
5.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하여 평가

【서식 6】

□ 재정상태 건실도

입 찰 참 가 자 명			
주 소			
설 립 년 도		등록번호	
년 도	2018년		비 고
자 기 자 본			
총 자 산			
유 동 자 산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부 채			
매 출 액			
당 기 순 이 익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 자 산			
유 동 비 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주) 1. 재정상태는 해당 용역업자의 국세청 신고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제출

2.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진단기관의 다음 각목의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

- 신규사업자 : 최초결산서
-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 등기일 또는 신고 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서식 7】

□ 환경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구 분	등록청	등록번호	제 목	등록년월	유효기간	비 고
신 기 술						
						( )건
특 허						
						( )건
실용신안						
						( )건
계						

주) 1. 환경기술 관련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환경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것만 기재
2. 증빙서류 첨부(신기술, 특허증, 실용신안 사본 등)
3. 참여업체(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하며 소속 직원이 보유한 기술은 제외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연구개발 투자실적

구 분	내 용	기 간	투 자 비 (백만원)	비 고 (업종 평균 투자비율)
2016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17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2018 년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평 균			매출액: 투자액: 투자비:	

주)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기재
2. 증빙서류 첨부(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확인한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제출, 해당협회,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빙서 첨부)
3.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기재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서식 8】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사 업 수 행 계 획 서

2020 . 8 .

업 체 명(원본1부만 기재)

Ⅰ. 사업수행계획서

1. 유입 오염물질의 특성조사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오염물질의 유입특성조사 계획 제시

2.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시설진단, 공정진단, 운영진단 수행계획 제시

3.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2페이지 이내로 작성)
   - 개선대책 및 최적화 방안 수립 계획 제시

4. 시설유지·관리 방안 (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적정처리효율 유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의 방안 제시 계획

주) 1. 용지크기는 A4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A3로 작성시에는 2페이지로 인정)
2. 흑백사용을 원칙으로함(칼라 사용금지), 흑백사진은 가능
3. 상기 항을 위반할 경우 각 항목당 0.5점씩 감점처리
4. **표지에 업체명 기재하지 말 것(1부만 기재할 것)**

【서식 9】

□ 가 · 감점

○ 가점 (+1)

가점 없음

○ 감점

부실벌점

구 분	내 용	부실벌점	비 고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주)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를 기재
2. 참여업체, 기술자의 누계 평균 부실벌점을 기재
3.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증빙서류 첨부)
4.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서식 10】

자 기 평 가 서(예시문)

□ 회사명 : ○○(주)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기술자 oo분야 0 0 0
분야책임기술자 oo분야 0 0 0, oo분야 0 0 0, oo분야 0 0 0

구 분			배 점	만 점 기 준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자	합 계		50			
	사업책임기술자	평가종합	25			
	0 0 0	등 급	10	특급기술자		
		경 력	15	7년이상		
	분야별책임기술자	평가종합	25			
	0 0 0	소 계	25			
		등 급	10	고급기술자		
		경 력	15	5년이상		
	0 0 0	소 계	25			
		등 급	10	고급기술자		
		경 력	15	5년이상		
	0 0 0	소 계	25			
		등 급	10	고급기술자		
		경 력	15	5년이상		
2. 업체수행실적		계	20			
		건 수	10	10건 이상		
		금 액	10	10억 이상		
3.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투자 실적		계	20			
		기술개발	10	10점이상		
		투자실적	10	90% 이상		
4. 신용도		계	5			
		입찰참가, 업무정지	2	없음		
		재정상태 건실도	3	자기: 90% 유동: 90%		
5. 사업수행계획서		수행적정성	5	적정성	-	
6. 가·감점		부실벌점	-2	없음		

【기타서식 1】

용 역 참 가 신 청 서

본인은 보성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에 참여 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술제안서 평가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며, 본 신청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입찰 참가대상 제외등 귀 사의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 록 업 종	
	등 록 부 문	

붙 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2부
2) 사업수행계획서 : 5부

20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코리아엔텍(주) 귀하

【기타서식 2】

가 격 입 찰 서

입 찰 건 명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입 찰 금 액	금 원정 (₩)

당사(기관)는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참여업체로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관련법령,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기간동안 기술진단 용역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주 소 :

상호또는명칭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코리아엔텍(주) 귀하

【기타서식 3】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2020 . 8 .

업 체 명

【기타서식 4】

서 약 서

금번 보성군에서 시행하는 “보성 공공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뿐 아니라 공개적이며 합리적인 업체선정 및 계약절차에 동의하므로 평가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코리아엔텍(주) 귀하